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67호

2021. 05. 25.

건 명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	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출연월일	2021. 05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5. 17.

## 보 고 내 용

## □ 제안이유

○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민원을 신속·정확·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, 공무원의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O 목적(안 제1조)
- 민원콜센터의 기능 및 시설·장비(안 제4조 ~ 제5조)
- O 민원콜센터의 운영(안 제6조)

#### □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전자정부법 제1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됨.